

기일	2018. 12. 5. 10:4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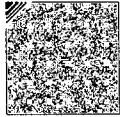
주심	가	나	다
----	---	---	---

사 건 2018재누2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임그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KT

부분 영수
2018. . .

답 변 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귀중



답 변 서

사 건 2018재누2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임그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이민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KT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재심 원고의 주장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심 원고의 주장은 서울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8재누99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 이라 합니다)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원고의 거듭된 재심청구는 소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심원고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본 청구를 포함하여 총 14차례의 재심청구를 하였고, 귀원은 이미 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반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반복된 이 사건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결론

따라서 재심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명백히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피고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이민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귀중